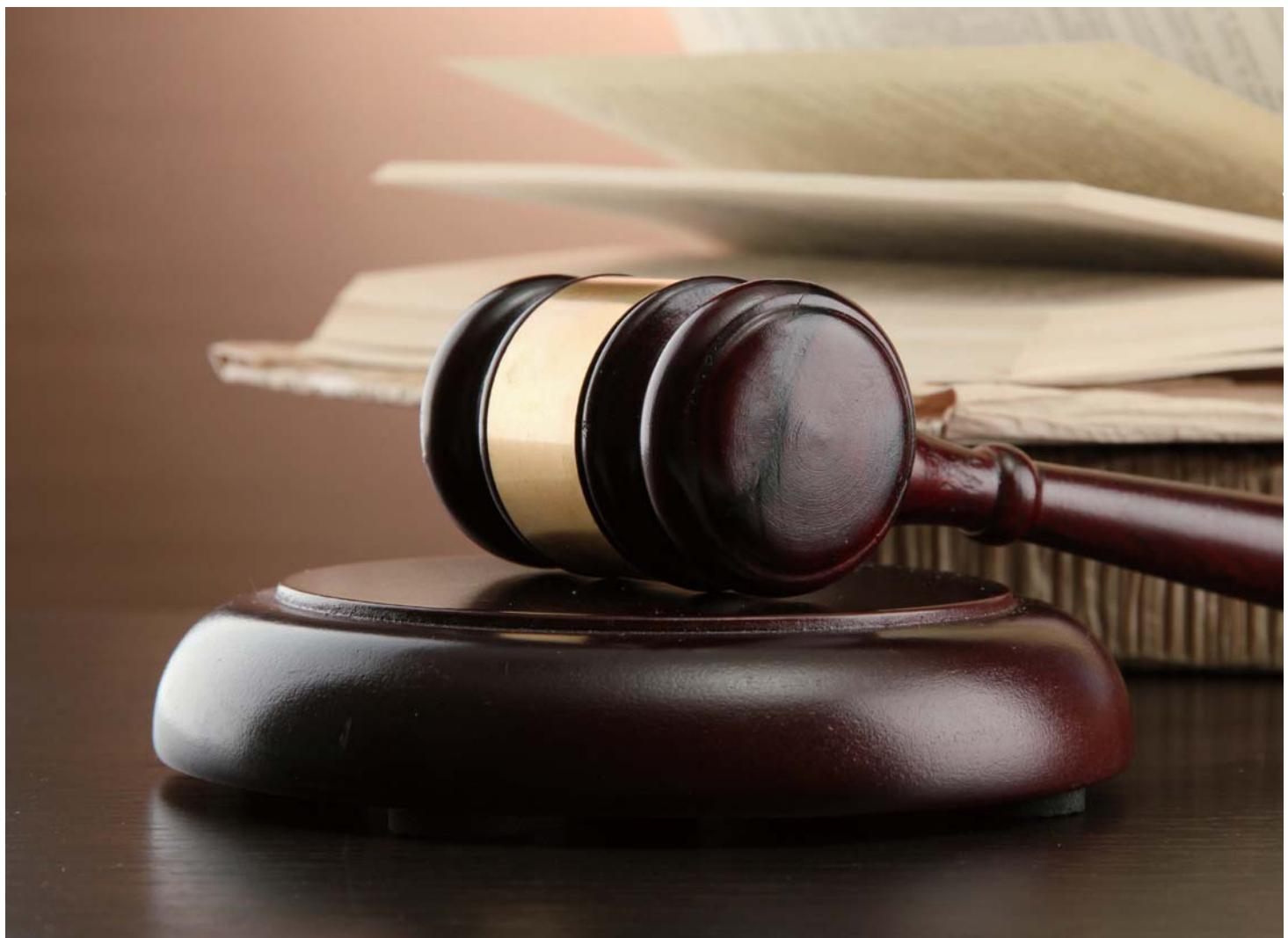


#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

일시 | 2014. 3. 12(수) 14:00

장소 |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



# 진행순서

## Session1 :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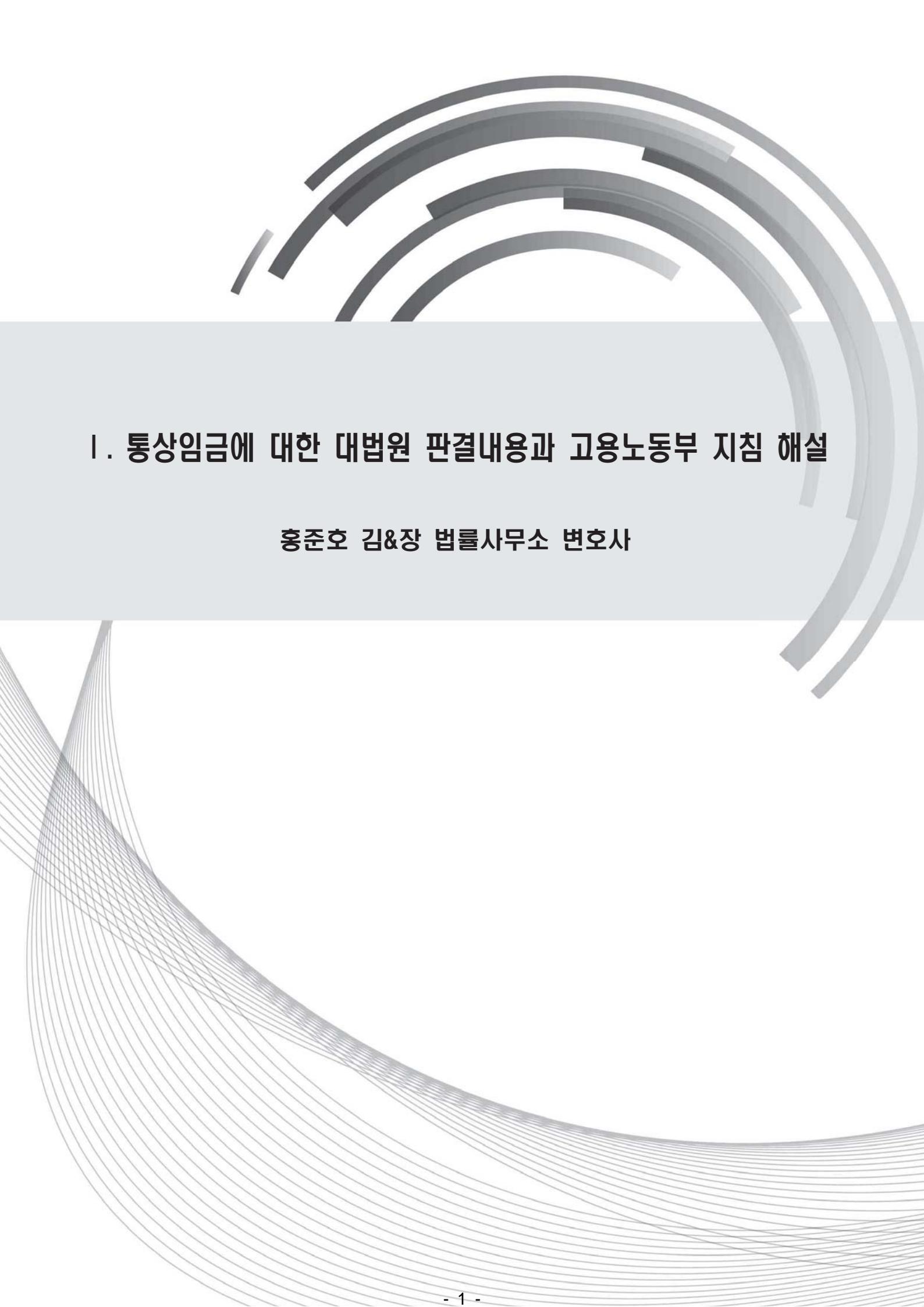
14:00-14:10(10'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인사말씀</li><li>○ 내빈소개</li></ul>	양금승 소장 (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) 배명한 팀장 (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)
14:10-15:10(60'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과 고용노동부 지침 해설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과 해석상의 쟁점사항</li><li>-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내용과 적용실례</li></ul></li></ul>	홍준호 변호사 (김&장 법률사무소)
15:10-15:55(45'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통상임금 범위확대의 영향과 中企의 대응전략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변화 분석</li><li>-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향</li></ul></li></ul>	신수일 노무사 (노무법인 정도/전경련경영자문단)
15:55-16:10(15'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Q&amp;A</li></ul>	홍준호 변호사, 신수일 노무사

## Session2 : 중소기업 인사·노무관리 법률상담

16:10-17:00(50'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통상임금, 근로계약, 인사·노무관리 등</li></ul> <p>※ 법률상담은 <u>사전예약</u>한 기업에 한함</p>	김현배 노무사(노무법인 다음/ 전경련경영자문단) 민영승 위원(전경련경영자문단) 박완식 위원(전경련경영자문단) 신수일 노무사(노무법인 정도/ 전경련경영자문단)
------------------	--	--

# 목 차

I.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과 고용노동부 지침 해설	..... 1
-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과 해석상의 쟁점사항	
-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내용과 적용실례	
II. 통상임금 범위확대의 영향과 中企의 대응전략 ..... 10	
-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변화 분석	
-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방향	



# I.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과 고용노동부 지침 해설

홍준호 김&장 법률사무소 변호사

#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심층분석과 향후 전망

-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-

KIM & CHANG | 2014. 2.

K&C 통상임금팀

##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

### 통상임금에 관한 첫 전원합의체 판결

- 그동안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(部) 판결은 다수 선고
- 판결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멈추지 않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여 판결 선고

###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한 판결

- 통상임금의 요건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던 상황
- 사법부의 최고 판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논란을 정리

### 당해사건을 비롯한 일반적인 이론정리

- 갑을오토텍 사건의 해결을 위한 판결에 그치지 않음
- 통상임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요건과 이론을 전개

#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효과

## 통상임금 사건의 해결기준

- 전국 법원에 제기된 각 통상임금 소송의 해결기준
- 재판부에 이번 판결의 해석을 설득력있게 제시할 필요 있음

## 근로현장의 규율적 기능

- 산업현장에서 초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작용
-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기준으로 작용

## 단체교섭 · 임금협상의 지표적 기능

- 노사간 단체교섭과 임금협상을 할 때 통상임금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
- 임금협상 전략 수립을 위해 이번 판결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 있음

Privileged and Confidential

3

KIM & CHANG

# 고용노동부 “노사지도 지침” 발표 (2014. 1. 23.)

## 노사지도 지침 발표의 배경



- 판례와 고용노동부 예규(「통상임금 산정지침」) 불일치 ⇒ 해석상 논란 제기
- 상반기 중 법령개정 예정 ⇒ 그 이전에 임단협 앞두고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

## 노사지도 지침이 가지는 의미



- 근로감독관의 일선 업무처리 매뉴얼 ⇔ 법령 or 예규가 아님
-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충실한 해석 차원 ⇔ 새로운 쟁점은 거의 없음

근로기준법의 개정 이전까지는 현장지침으로 기능

⇒ 이번 대법원 판결 해석의 주요 근거 중 하나

# 통상임금의 정의와 결정시기

## 통상임금의 정의



“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”  
“통상임금은 근로자가 **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**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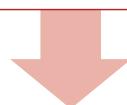
## 통상임금의 결정시기



“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.”  
“그래야만 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하여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, 실제 연장근로 등이 제공된 때에는 사전에 확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가산임금을 곧바로 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.”

# 통상임금의 요건과 개념적 징표

“소정 근로의 대가  
(도급근로자는 총 근로의 대가)”



“정기적 · 일률적 · 고정적으로 지급”
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→ 통상임금

# [핵심적 판단 ①]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

## 정기성에 관한 일반이론



“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.”

## 갑을오토텍의 정기상여금



“이 사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,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”

Privileged and Confidential

7

KIM & CHANG

## 일률성의 의미

###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경우



“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,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,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”

### ‘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’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



“작업 내용이나 기술,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”  
“가족수당에서 부양가족 여부와 같은 조건은 해당 안 됨”

Privileged and Confidential

8

KIM & CHANG

## 고정성

초과근로 이전에 지급 여부 및 액수 확정된 임금만  
→ 초과근로수당 확정적 계산 가능

### 고정성



“‘고정성’이라 함은 ‘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,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’  
‘고정적인 임금’은 ‘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’이다.”

Privileged and Confidential

9

KIM & CHANG

## 고정성이 있는 경우

### 임금항목 내에서 가분적 판단



“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.”

Privileged and Confidential

10

KIM & CHANG

## [핵심적 판단 ②] 재직 중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

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 → 비고정적 임금

고정성이 결여됨을 명시



“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, 그 임금은 이른바 ‘소정근로’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,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”

## 신의칙 위배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

- ① 총액 기준 노사합의 당시 임금협상의 구조와 한계, 임금협상 방법과 과정, 임금항목의 결정방법과 내용, 관행을 고려
- ②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임금수준을 정함  
(명시적 합의, 묵시적 합의, 근로관행)
- ③ 노사 합의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여, 사용자에게 예측치 못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

#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의 판단기준

## 다수의견



“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인상을 및 그에 관한 과거 수년간의 평균치,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.”

“갑을오토텍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등의 연 600%로 산정되고, 직원 수는 생산직 직원만 400여 명에 달하는데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,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,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을 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을 훨씬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.”

Privileged and Confidential

13

KIM & CHANG

#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의 판단기준

## 보충의견



“피고는, 시간급 통상임금이 임금협상에 따른 금액보다 69.9% 상승하고,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은 임금협상에 따른 19.9%에서 40.6%로 2배 넘게 상승하고, 한해 당기순이익의 99.8%를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.”

“만일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,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으로써 피고에게 추가되는 재정적 부담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.”

Privileged and Confidential

14

KIM & CHANG

# 정기상여금에 한하여 신의칙이 적용되는지 여부

## 신의칙 요건으로 '정기상여금의 특수성' 판시



"이러한 관행이 정착하게 된 데에는, **상여금의 연원이 은혜적·포상적인 이윤배분이나 성과급에서 비롯된 점**, 국내 경제가 성장기로 접어든 이후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과급, 공로보상 또는 계속근로 장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지급형태나 지급조건 등이 다양하여 그 **성질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 점**, 근로현장에서 노사 양측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온 **고용노동부의 '통상임금 산정지침'**이 1988. 1. 14. 제정된 이래 일관되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온 점,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2012. 3. 29. 이른바 '금아리무진 판결'이 선고되기 전에는 **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만 있었고**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판결은 없었던 점 등이 그 주요 원인이 되어 노사 양측 모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"

Privileged and Confidential

15

KIM & CHANG

## 신의칙 항변은 단체협약에만 적용되는지



- 전합 판결은 이번 사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직원들의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**명시적·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근로관행**에 대해서 신의칙을 적용함
  - 즉, 전합 판결은 신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노사합의에 명시적인 합의 이외에도 묵시적 합의나 근로관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

### 판시사항 (2012다89399 판결문 23쪽)

...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을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 직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와 관리직 직원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으며 ...

- 묵시적 합의나 근로관행도 포함된다고 판결이 보고 있으므로
  - 취업규칙 제정·변경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견청취 또는 동의 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취업규칙도 신의칙이 적용되는 근로관행의 한 유형으로 해석됨

### 【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】

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Privileged and Confidential

& CHANG

## **II. 통상임금 범위확대의 영향과 中企의 대응전략**

**신수일 노무법인 정도 대표/전경련경영자문단 전문위원**

# 통상임금 확대의 영향과 中企 대응전략

## 신수일노무사

### 1. 2014년 노사관계 전망

#### 가. 통상임금 제2라운드 대결 시작

- 개별사업장별 미지급 통상임금 청산 문제 이슈
- 향후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의 대변화 예고
  - ☞ 근로자 : 안정적이고 단순한 기본급중심의 임금체계 주장
  - ☞ 사용자 : 능력 및 성과와 연계된 임금체계 주장(직무급, 변동급 확대)

#### 나. 정년 60세 및 임금피크제 도입

- 2013.4월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국회통과
  - ☞ 2016.1.1 :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 시행
  - ☞ 2017.1.1 : 300인 이하 사업장 시행

#### 다.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

- 주40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 관련 대법원 선고예정
-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2016년 시행 단계적 시행방안 발표

#### 라.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

- 정규직과 비정규직, 원청과 하청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차별격차 심화

## 2.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현황

### 1) 임금구성

사례수	임금총액	정액급여(73.7%)			초과급여 (8.7%)	특별급여(17.6%)	
		기본급	통상수당	기타수당		고정상여	변동상여
978	100%	57.3%	9.8%	6.6%	8.7%	11.8%	5.8%

▶ 임금구성 비율('13.6 고용부 실태조사 100인 이상 사업장 대상)

### 2) 규모별 임금총액 구성비(2012 고용형태별조사 참조)

규 모	정액급여	구 분			초과급여	특별급여	
		기본급	통상임금	기타수당		고정상여	변동상여
10~29	85.1%	72.7%	81.1%	4.0%	4.5%	6.5%	3.8%
30-99	81.2%	67.3%	77.4%	3.8%	7.9%	6.9%	4.0%
100-299	76.1%	61.2%	71.7%	4.3%	8.7%	11.0%	4.3%

## 3. 우리나라 임금체계 문제점

### 1) 근로가치 및 생산성 반영이 미흡하다

▶ 과도한 연공급제(100인 이상 71.9% 호봉급 운영) 및 복잡한 임금구성

### 2) 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혼선 초래

▶ 임금구성의 불합리화, 연봉제 도입이 높지만 호봉제 유지(무느만 연봉제)

▶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무에도 포괄산정임금제 도입(예 : 생산직)

### 3) 고용에 부정적 영향

▶ 근속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고령자 조기퇴직, 신규채용 감소, 고용 외부화

### 4) 노동시장 이동의 경직성 가중

▶ 연공급제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근로자 재취업 어려움

### 5) 임금격차 확대

▶ 임금격차 확대(정규직-비정규직, 원청-하청간)

### 6) 장시간 근로 관행 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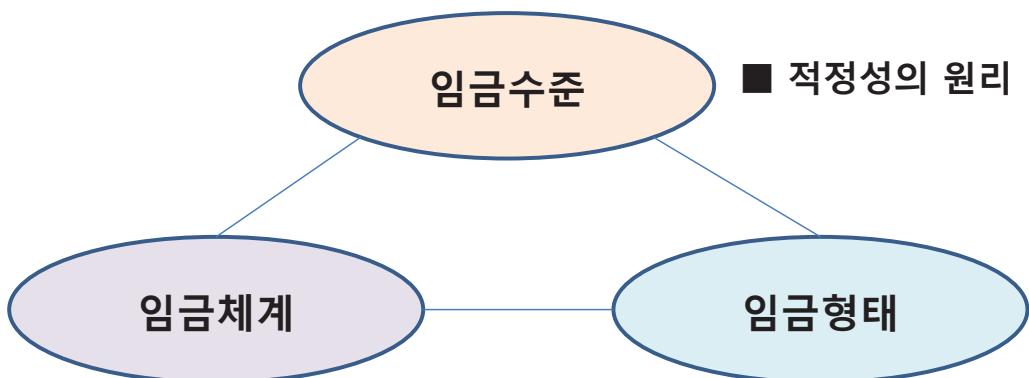
▶ 연공급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체계로 초과근로(잔업/특근) 유도

▶ 근로자의 연장근로 요구 관행

★ 참조 :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참조

## 4. 임금체계 기본 이해

### 1) 임금제도에 대한 이해



■ 공정성의 원리  
(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가)  
연공급, 직능급, 직무급, 성과급

■ 합리성의 원리  
(임금계산, 지불방식의 문제)  
시간급제, 일급제, 월급제, 연봉제

## 4. 임금체계 기본 이해

### 2) 임금체계 구성요소

임금구조	임금수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총보상의 수준 및 구성항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임금등급의 수, 등급간 임금 차이</li><li>- 기본임금 결정기준</li><li>- 기본급 인상방법</li></ul>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기업조직 구성원의 평균급여 수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기업의 지불능력, 최저생계비</li><li>- 임금경쟁력, 동기부여</li><li>- 노사간 교섭</li></ul></li></ul>
임금구성	임금결정요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총보상의 배분문제(기본급:변동급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고정급 : 기본급, 제수당, 상여금</li><li>- 변동급 : 성과급</li><li>- 복리후생성 급여</li></ul></li><li>☞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구성 개선으로 접근 필요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임금 결정요인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고정급 : 속인적 요소와 직무적인 요소로 구분</li><li>- 변동급 : 개별성과와 집단성과 구분</li><li>- 집단성과는 조직성과와 경영성과로 구분 필요</li></ul></li></ul>

## 4. 임금체계 기본 이해

### 3) 직군별 임금체계 개선 방향

구 분	관리직군	영업직군	생산직군
특 성	조직내 성장	업무 성과	정형화된 반복업무
임금구조	임금등급수	4~5 단계	3단계 이내
	임금등급 차등폭	중소기업 여건고려 생략 가능	성과 보상을 위해 직급내 차등
	기본급 결정	직급(능력, 연공, 책임 등)	직급+직무적 특성
	기본급 인상방법	고과 인상	개별 인상
임금구성		고정급과 변동급 (고정급8 : 변동급2)	변동급 중심 (고정급7 : 변동급3)
변동급 결정기준		개별성과와 조직 성과 연계 필요	개별성과 중심
조직성과 중심			

## 5. 임금체계 개편방향

### 1) 임금체계 개편 목적

- 1997년 IMF 이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했지만, 여전히 호봉제가 남아있고 직무가치 보다는 연공적인 요소로 운영되고 있음
- 통상임금 범위확장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도입
-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최소화
- 대응 방향
  - ▶ 설비투자 또는 해외공장을 활용, 이전을 통한 고용조정☞ 고용조정 또는 근로시간 단축방안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
  - ▶ 통상임금 조정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☞ 법적인 제약 사전 검토 필요

## 5. 임금체계 개편방향

### 2) 임금체계 개편전 사전 법률적 검토

- 임금 항목간 상호 영향관계 검토
  - ▶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기능 고려 분석
    - ☞ 임금구성 예 : 기본급, 직책수당, 정기상여금, 중식비, 교통비
    - ☞ 기본급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치나, 상여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, 매월 지급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에는 산입되지 않음
-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순간 순환오류에 빠지는 현상 발생
-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
  - ▶ 기존의 고정적인 임금의 일부를 변동적인 임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근로조건 불이익에 해당됨.
    - ☞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절차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협을 개정하여야 하며,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.

## 5. 임금체계 개편방향

### 3) 임금체계 개편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

- 전직원 설명회
  - ▶ 임금체계 개편의 성공요인은 직원 과반수의 동의와 수용성 확보
  - ▶ 임금체계의 개편 필요성, 목적, 개편방향 설명
    - ☞ 사전 임금체계 개편 위원회 또는 TFT 구성
  - ▶ 반드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필요
- 임금체계 개편 방향 : 제도 설계 + 규정 개정 중심으로
- 전직원들의 참여 유도 및 모든 경영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구축
  - ▶ 전직원 워커숍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동의서 작성
  - ▶ 처음부터 제도설계과정에 참여토록 함이 중요

## 5. 임금체계 개편방향

### 4)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

- 임금체계 개편 방향
  - ▶ 호봉제를 성과평가와 연계한 연봉제 도입
  - ▶ 수당 항목 최소화 방안, 적법한 포괄산정임금제 도입
- 기본연봉
  - ▶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인상을 적용(최고등급 최저등급 고려)
  - ▶ 기본연봉 임금항목 통합, 복리후생적 성격 임금 구분 등
- 성과연봉(정기상여금을 새로운 보상체계로 개편)
  - ▶ 비누적적 방식 채택, 해당 연도의 성과결과에 따른 보상적 성격
  - ▶ 그룹별 차등 지급률 결정
  - ▶ 성과연봉 재원마련 고민(예 : 고정급 일부 + 회사 별도 재원)

## 5. 임금체계 개편방향

### 현재(As-is)

⇒

### 개선(To-be)

기본급	▶	기본급 (기본연봉)	○ 기본연봉은 매년 평균인상을과 평가 인상액에 의한 누적방식
정기상여			○ 평가 인상액은 개인평가 + 조직성과 평가 결과 에 따라 차등 적용
자격수당			○ 평균 인상을률은 물가인상률, 인건비 재원, 대외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 필요
근속수당		변동수당	○ 법정수당 점진적 감소 유도
시간외수당			○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, 순수 복리후생 항목 으로 전환하여 관리 필요
차량유지비			○ 재원산정을 고려하고 지급방식을 개인 또는 집단 성과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안 유도
식대지원비			
성과급/일시금		경영성과급 인센티브	

## 6. 기타 고려사항

### 1) 향후 통상임금 장래분에 대한 대응방안

- 기업 입장에서는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 
**그 지급조건에 변동성을 주는 방안 강구 필요**
  - ☞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임금 항목을 특정 목표 달성을 시 목표달성을 따라 금액의 차이를 두어 지급하는 방안
  - ☞ 특정시점 재직 중인 자 중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자에게만 임금항목을 지급하는 방안

### 2) 연장근로, 휴일근로시간 통제 필요

- 통상임금의 증가는 과도한 법정수당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불필요한 연장, 야간, 휴일근로를 줄여나가도록 함이 중요
-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음.  
(2010.4 수원지법 성남지원, 2012.11 서울고법)  
향후 대법원 확정판결 선고예정.

### 3) 포괄산정임금 약정제도의 문제점

- 포괄임금약정은 기업의 입장에서 양날의 칼이다.
-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 약정임금 대상이 된다고 함.  
자칫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.

## 7. 어떻게 임금체계를 개선할 것인가?

- 연공중심의 임금체계 탈퇴
- 임금구성 항목의 단순화
- 성과와 연동된 임금체계 실현
-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설계
- 산업의 특성을 감안
- 사용자의 면밀한 개선 방향 검토
-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자율적 참여
- 정부의 자율적인 개선 분위기 조성

## 8. 성공적인 임금체계 개선 Tip

- 1) 임금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저항감을 불러온다.
- 2) 무엇보다 CEO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.
- 3) 과거처럼 “신인사제도”를 도입하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? 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.
- 4)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.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구성원이 이해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규제에 불과하다.
- 5) HR 담당자는 임금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을 구성원들에게 해주어야 사전에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.
- 6) 온정주의와 관대화 경향을 가급적 배제하라
- 7) 제도내용과 운영은 복잡하지 않고 쉽게 설계 하라
- 8) 구성원의 지나친 경쟁의식과 경직된 분위기를 경계하라

### *Note*

### *Note*

### *Note*

### *Note*